

대학평의위원회

1. 회의제목 : 대학평의위원회(2026.02.09.)
2. 회의일시 : 2026-02-09 월 13:30 ~ 15:00
3. 회의장소 : 본관 3층 회의실

4. 참석인원

구분	인원	성명
참석인원	9명	정태진, 정인호, 김보나, 이갑래, 조종건, 김훈, 김덕수, 백운, 김호경
불참인원	5명	구자경, 이재영, 송호준, 오세준, 신유성

5. 회의안건

- 2025학년도 최종 추경안
- 2026학년도 본예산안

6. 내용첨부 :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_20260209_(최종).pdf 별첨

7. 의견

(비동의)조종건 : 본 기타안건 논의는 절차적 정당성과 법리 적용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며, 개인의 표현 행위를 평의원 자격 문제로 연결한 논의 방식과 그에 기초한 회의록 정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전달 방법을 안내해 주시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동의)김훈 : 확인완료

(동의)김덕수 : 조종건 위원이 대학평의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동의 없이 녹음을 한 것을 2026.02.12.15:10에 대학평의위원회 카톡방에서 시인하였으므로 이에 응당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26.02.09

의장	정태진	2026/02/12 확인
부의장	정인호	2026/02/12 확인
위원	이갑래	2026/02/19 확인
위원	조종건	2026/02/14 확인
위원	김훈	2026/02/19 확인
위원	김덕수	2026/02/14 확인
위원	백운	2026/02/12 확인
위원	김호경	2026/02/13 확인
간사	김보나	2026/02/12 확인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회의소집 통보일자	2026. 1. 22.(목)
위원정수 : 13명	재적위원 : 13명

1. 회의일시 : 2026. 2. 9.(월) 13:30
2. 회의장소 : 본관 3층 회의실
3. 참석여부

구분	성명	비고
참석인원 (8명)	교원 : 정태진(의장), 이갑래 직원 : 정인호(부의장), 김덕수, 백운 위촉 : 김훈, 조종건 조교 : 김효경	간사: 김보나
불참인원 (5명)	(교원)구자경, 송호준, 이재영, 오세준 (학생)신유성	

4. 안건

- 가. 2025학년도 최종 추가경정 예산(안) 자문
- 나. 2026학년도 본예산(안) 자문

5. 회의내용

김보나 간사(이하 "간사")가 대학평의원회 재적인원 13명 중 8명이 참석하여 회의 개최 성원이 됨을 보고하고, 정태진 대학평의원회 의장(이하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가. 2025학년도 평택대학교 최종 추가경정 예산(안) 자문

의장이 2025학년도 평택대학교 최종 추가경정예산 안건을 상정하다.

간사가 최종 추가경정 사유와 수입·지출 예산 증감항목으로 수입부문은 등록금및수강료수입 증가 · 전입및기부금수입 증가 · 교육부대수입 증가 · 교육외수입 감소 · 유동부채입금 증가 · 고정부채입금 감소, 지출부문은 보수 감소 · 관리운영비 감소 · 연구학생경비 감소 · 교육외비용 감소 · 예비비 감소 · 투자와기타자산지출 증가 · 고정자산매입지출 증가 · 유동부채상환 감소 등으로 3차 추경 대비 42,396천원 증가한 47,624,908천원임을 설명하다.

의원들은 대출 구조,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차입 현황, 연말·연초 자금 부족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다. 간사는 국민은행 차입금은 상환 완료하였고, 사학진흥재단 차입금은 2026년 3월에 상환 완료되며, 신한은행 차입금도 단계적으로 상환해 나갈 예정임을 설명하다. 또한 2025학년도 3차 추가경정 이후 기간이 짧아 예산 변동이 크지 않음을 설명하다.

의원 간 논의한 결과, 최종 추가경정 예산(안) 대해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에 김훈 의원의 동의와 이갑래 의원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의결하다. .

나. 2026학년도 평택대학교 본 예산(안) 자문

의장이 2026학년도 평택대학교 본 예산 안건을 상정하다.

간사가 본 예산(안) 수입·지출 예산 증감항목으로 수입부문은 등록금및수강료수입 증가 · 전입및기부금수입 감소 · 교육부대수입 감소 · 교육외수입 감소 · 투자와기타자산수입 감소 · 유동부채입금 감소 · 고정부채입금 감소 · 전기이월자금 감소, 지출부문은 보수 증가 · 관리운영비 증가 · 연구학생경비 감소 · 교육외비용 감소 · 예비비 감소 · 투자와기타자산지출 감소 · 고정자산매입지출 감소 · 유동부채상환 감소 · 고정부채상환 감소 등으로 2025학년도 최종 추경 대비 86,813천원 증가한 47,711,721천원임을 설명하다.

부채 상환과 관련하여 국민은행 및 사학진흥재단 차입금 상환으로 유동·고정부채 상환액이 감소하였으며, 전반적인 부채 구조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설명하다.

의원들은 외국인 유학생 및 한국어 연수생 유치 실적, 기부금 수입의 현실성, 시설관리비 증액 내역, 기숙사 운영 및 국제교류원 수용 계획, 편입 및 재학생 충원을 저하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다. 간사는 국제교류원 유학생 및 한국어 연수생 수가 현재 500명 이상이며, 2026학년도까지 단계적 확대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른 생활관 보수 및 시설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다. 또한 편입 및 중도 이탈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임을 설명하다.

의원 간 논의한 결과, 2026학년도 본 예산(안) 대해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에 정인호 부의장의 동의와 백운 의원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의결하다.

다. 기타안건

정인호 부의장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기타안건을 상정하다.

정인호 부의장은 조종건 의원에게 대학평의원회 의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별도의 단체 명의로 주 4일 근무제 관련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대학평의원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적절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다. 아울러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합의체 기구인 만큼, 외부 단체 명의로의 표현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다.

조종건 의원은 현수막 게시 사실을 인정하다. 다만 이는 대학평의원으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대학원생이자 학내 구성원의 입장에서 주 4일 근무제와 관련한 공론화를 제안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하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으며, 주 4일 근무제가 학습권, 행정 운영 등 대학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히다.

또한 주 4일 근무제 논의는 총장 선출 과정 등에서 언급된 바 있어 학내에서 이미 회자되고 있던 사안으로 인식하였으며, 평의원 또는 관련 위원 자격으로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사실은 없다고 명확히 부인하다.

아울러 대학평의원회 내부 구조상 의제 설정과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평의원회 명의를 아닌 별도의 단체 명의로 학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설명하다.

정인호 부의장은 대학평의원으로서 취득한 정보와 지위를 고려할 때 외부 단체 활동과 병행하는 행위는 이해충돌 또는 역할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평의원 직무와 외부 활동은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다. 또한 해당 사안은 평의원회 내부 절차를 통해 우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백운 의원은 현수막 문구가 토론 제안의 취지로만 해석되기 어려우며, 특정 정책이나 집단에 대한 비판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다. 또한 협의 중인 사안을 외부 단체 명의로 게시한 행위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다. 동일한 방식의 활동이 지속될 경우 평의원 직책 유지의 적절성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다.

김덕수 의원은 합의체 기구에서는 다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내부 논의 결과와 별도로 외부 채널을 통해 행동하는 것은 평의원회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다.

김효경 의원은 해당 현수막이 외부 제3자의 시각에서 볼 때 대학평의원회의 공식 입장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다. 동시에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밝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을 외부 단체 명의로 현수막 게시 방식으로 표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학평의원으로서 기대되는 역할과 책임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하다.

의장이 말하기를 법학에서 Color of Justice 는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할때의 직책이나 신분이 공적인 신분인지 사적이 신분인지를 판단하는 근거인데 조종건 의원님이 교내에 현수막을 건 행위는 본인이 주장하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평의원 신분으로 행한것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기에 평의회의 합의나 승인이 없이 교내 문제에 대해서 찬반 의견에 상관없이 평의회에서 다루지 않은 사안을 다른 신분으로 행하였다고 하여도 대학평의회 운영 취지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결함이 있으므로 평의원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이러한 행위를 자제해 주실것을 당부하였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평의원 자격을 유지하면 안된다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6. 폐회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폐회하자는 의장의 건의와 전체 의원의 동의·재청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15시 00분에 폐회하다.

2026년 2월 9일